

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

2017. 4



국 토 교 통 부
원주시방국토관리청

섬강 하류 권역 하천 기본 계획 (변경)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

1. 주민의견 수렴개요

-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,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2조,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, 제14조에 의거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

가. 계획수립 행정기관 및 승인기관

-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

나.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

- 협의기관 : 원주지방환경청
- 관할 도 : 강원도, 경기도
- 관할 시·군 : 원주시, 횡성군, 여주시, 양평군

다.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고·공람

- 중앙일간지 : 전국매일신문
- 지방일간지 : 강원도민일보, 경기일보
- 정보통신망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라. 주요 공고·공람 내용

- 공람기간 및 장소

구 분	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	2016.8.22. ~ 2016.9.21. (24일간, 공휴일 제외)
공람 장소	원주시	원주시청(건설방재과)
	횡성군	횡성군청(안전건설과)
	여주시	여주시청(환경관리과)
	양평군	양평군청(안전총괄과)
	정보통신망	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- 주민의견 제출기간
 -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(2016. 9. 28 까지)
- 의견제출 방법
 -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

마. 주민설명회

- 주민설명회 개최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원주시	2016.9.1. 10:00	문막복지회관	
횡성군	2016.9.1. 15:00	서원면사무소	
여주시	2016.9.2. 10:00	강천면 주민자치센터	
양평군	2016.9.5. 14:00	양동면 주민자치센터	

바. 주민설명회 공고

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4809호 www.jeonmae.co.kr 전국매일신문

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-41호

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석강 상류 및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19일
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

1. 사업의 개요

- 계 획 명 : 석강 상·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
- 위 치 : (상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홍천군 일원
(하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
- 시 행 자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
- 사업기간 : 2011. 8.31 ~ 2017. 6.19
- 사업내용 : (상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3개소(석강, 계천, 구사천, 유등천, 대관대천, 금계천, 장봉천, 초월천, 전천, 대미원천, 하수남천, 생운천, 장양천, 옥산천)(L=195.2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(하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7개소(석강, 원주천, 신촌천, 화천, 홍양천, 일리천, 이리천, 삼산천, 석곡천, 매월천, 단석천, 계정천, 서곡천, 대지천, 대안천, 궁촌천, 왕십천, 부평천)(L=207.3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
2. 공람 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16. 8.22 ~ 2016. 9.21
- 공람장소 : (상·하류 권역공동)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, 원주시 건설방재과, 횡성군 안전건설과 (상류권역)홍천군 건설방재과 (하류권역)여주시 안전총괄과, 양평군 안전총괄과

3.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- 석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 8.30. 10:00	원주시 총지연사무소 회의실	평가대상 지역 주민
횡성군	2016. 8.30. 15:00	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회의실	
홍천군	2016. 8.31. 15:00	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	

- 하류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 9. 1 10:00	원주시 문막읍 문막복지회관	평가대상 지역 주민
횡성군	2016. 9. 1 15:00	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	
여주시	2016. 9. 2 10:00	여주시 강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양평군	2016. 9. 5 14:00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
4.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

- 시기 : 2016. 8.22 ~ 2016. 9.28(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)
- 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

5. 기타 자세한 내용

-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(☎ 033-749-82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국매일신문

2016년 8월 19일 금요일

강원도민일보

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-41호

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석강 상류 및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19일

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

1. 사업의 개요

- 계 획 명 : 석강 상·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
- 위 치 : (상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홍천군 일원
(하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
- 시 행 자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
- 사업기간 : 2011. 08. 31 ~ 2017. 06. 19
- 사업내용 : (상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3개소(석강, 계천, 구사천, 유등천, 대관대천, 금계천, 장봉천, 초월천, 전천, 대미원천, 하수남천, 생운천, 장양천, 옥산천)(L=195.2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(하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7개소(석강, 원주천, 신촌천, 화천, 홍양천, 일리천, 이리천, 삼산천, 석곡천, 매월천, 단석천, 계정천, 서곡천, 매지천, 대안천, 궁촌천, 원십천, 부평천)(L=207.3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
2. 공람 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16. 8. 22 ~ 2016. 9. 21
- 공람장소 : (상·하류 권역공동)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, 원주시 건설방재과, 횡성군 안전건설과 (상류권역)홍천군 건설방재과 (하류권역)여주시 안전총괄과, 양평군 안전총괄과

3.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- 석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 8.30. 10:00	원주시 호천면사무소 회의실	평가대상 지역 주민
횡성군	2016. 8.30. 15:00	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회의실	
홍천군	2016. 8.31. 15:00	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	

- 하류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 9. 1 10:00	원주시 문막읍 문막복지회관	평가대상 지역 주민
횡성군	2016. 9. 1 15:00	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	
여주시	2016. 9. 2 10:00	여주시 강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양평군	2016. 9. 5 14:00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
4.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

- 시기 : 2016. 8. 22 ~ 2016. 9. 28(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)
- 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

5. 기타 자세한 내용

-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(☎ 033-749-82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강원도민일보

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-41호

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섬강 상류 및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19일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**1. 사업의 개요**

- 계획명 : 섬강 상·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
- 위 치 : (상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홍천군 일원
(하류권역)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
- 시 행 자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
- 사업기간 : 2011.08.31 ~ 2017.06.19
- 사업내용 : (상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3개소(섬강, 계천, 구사천, 유동천, 대관대천, 금계천, 창봉천, 초원천, 전천, 대미원천, 하수남천, 생운천, 장양천, 옥산천)(L=196.2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(하류권역)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7개소(섬강, 원주천, 신촌천, 화천, 홍양천, 일리천, 이리천, 삼산천, 석곡천, 매월천, 단석천, 계정천, 서곡천, 매지천, 대안천, 궁촌천, 원심천, 부평천)(L=207.3km) 하천기본계획(변경)

2. 공람 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16.8.22 ~ 2016.9.21
- 공람장소 : (상·하류 권역공동)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, 원주시 건설방재과, 횡성군 안전건설과 (상류권역)홍천군 건설방재과 (하류권역)여주시 안전총괄과, 양평군 안전총괄과

3.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- 섬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8.30. 10:00	원주시 호저면사무소 회의실	평가대상지역 주민
횡성군	2016.8.30. 15:00	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회의실	
홍천군	2016.8.31. 15:00	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	

-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사·군	일 시	장 소	대 상
원주시	2016.9.1 10:00	원주시 문학읍 문학복지회관	평가대상지역 주민
횡성군	2016.9.1 15:00	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	
여주시	2016.9.2 10:00	여주시 강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양평군	2016.9.5 14:00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

4.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

- 시기 : 2016.8.22 ~ 2016.9.28(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)
- 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

5. 기타 자세한 내용

-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☎ 033-749-6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경기일보

사. 주민설명회 사진



원주시 주민설명회



황성군 주민설명회



여주시 주민설명회



양평군 주민설명회

아.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			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1(목요일) 10:00		
설명회 장소	원주시 문막읍 문막복지회관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이정		1
	유지		2
	이근		3
	유지		4
	정		5
	김		6
	김		7
	김		8
	김		9
	김		10
	김		11
	김		12
	김		13
	김		14
	김		15
	김		16
	김		17
	김		18
	김		19
	김		20
	김		21
	김		22
	김		23
	김		24
	김		25
	김		26
	김		27
	김		28
	김		29
	김		30
	김		31
	김		32
	김		33
	김		34
	김		35
	김		36
	김		37
	김		38
	김		39
	김		40
	김		41
	김		42
	김		43
	김		44
	김		45
	김		46
	김		47
	김		48
	김		49
	김		50
	김		51
	김		52
	김		53
	김		54
	김		55
	김		56
	김		57
	김		58
	김		59
	김		60
	김		61
	김		62
	김		63
	김		64
	김		65
	김		66
	김		67
	김		68
	김		69
	김		70
	김		71
	김		72
	김		73
	김		74
	김		75
	김		76
	김		77
	김		78
	김		79
	김		80
	김		81
	김		82
	김		83
	김		84
	김		85
	김		86
	김		87
	김		88
	김		89
	김		90
	김		91
	김		92
	김		93
	김		94
	김		95
	김		96
	김		97
	김		98
	김		99
	김		100

원주시 참석자명부

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
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
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1(목요일) 15:00		
설명회 장소	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이		
	김		
	유		
	김		
	박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</			

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
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
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1(목요일) 15:00		
설명회 장소	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이		이
	김		✓
	김		2
	유		3
	박		4
	이		5
	장		6
	박		7
	신		8
	원		9
	최		

횡성군 참석자명부

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
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
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2(금요일) 10:00		
설명회 장소	여주시 감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1	이		이
2	이		이
3	고		고
4	문		문
5	이		이
6	이		이
7	이		이
8	이		이
9	이		이
10	이		이
11	이		이
12	이		이
13	이		이
14	이		이
15	이		이
16	이		이
17	이		이
18	이		이
19	이		이
20	이		이

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
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
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2(금요일) 10:00		
설명회 장소	여주시 감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	김		

여주시 참석자명부

용역명	성강 하류권역 하천기변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상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황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계회 일시	2016. 9. 5(화요일) 14:00		
설계회 장소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김		
	박		
	김		
	정		
	오		
	최		
	한		
	조		
	이		

용역명	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5(월요일) 14:00		
설명회 장소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박		
	김		
	한		
	박		
	이		
	김		
	이		
	원		

용역명	선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		
사업지구 위치	강원도 원주시, 횡성군, 경기도 어주시, 양평군 일원		
설명회 일시	2016. 9. 5(월요일) 14:00		
설명회 장소	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		
주 소	서 명		
김			
이			
이			
이			
이			
박			
홍			
정			
조			
최			

- 8 -

2.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초안검토의견 및 반영여부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. 총괄	□ 본 계획은 강원도 원주시·횡성군, 경기도 여주시·양평군 일원의 국가 및 지방하천 18개소, 212.33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, 하천의 이·치수 및 환경적 측면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□ 하천의 이·치수 및 환경적 측면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	-
		□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, 해당 구간별 계획홍수량, 계획홍수위, 계획하폭, 하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성을 검토하되,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시설물 여부, 하천 경관 등을 고려한 하천공사계획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□ 하천별 계획홍수량, 계획홍수위, 하폭, 하도 특성 등을 반영한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필요구간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시설물 여부, 하천 경관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□ 하천공간의 관리계획 수립 시 구간별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천 지구별 계획을 세우되, 친수지구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함	□ 계획하천별 하천 특성, 구간별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친수지구는 기존계획 및 시설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였음	반영
	II. 세부 협의 내용	가.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) 동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, 유입·합류되는 하천의 여건,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본 계획과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여부, 유입·합류되는 하천의 여건,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제시하였으며,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필요구간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가) 원주천의 경우 홍수방어계획(댐, 저류지 설치 등)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하천의 수리적 영향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	○ 원주천 홍수방어계획은 「원주천댐 타당성 조사(안), 2015, 원주시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검토하여 원주천댐과 천변저류지 각 1개소를 계획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 내용	나. 대안의 설정 1) 제방 및 호안계획 수립 시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별 계획된 제방 및 호안은 하천의 특성 및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호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2) 동 사업은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추진전략과 방법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별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수질 등의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, 기준유지를 전제한 계획비교 및 수단·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다. 자연환경의 보전 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가) 본 계획의 내용을 구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, 특히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 본래 지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별 계획의 내용을 평면도를 통해 구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, 생태환경이 양호한 생태·자연도 1등급역 등은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나) 각 하천의 동·식물상 조사 결과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서식지 및 생물종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사업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등 저감방안을 면밀히 수립하되, 해당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을 우선 고려 - 사업구간 내 육수동물 등 주요종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주요 종의 번식기 및 산란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, 구간별, 시기별로 공사 진행을 달리하는 단계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- 대부분의 하천에서 생태계교란생물(돼지풀, 단풍잎돼지풀, 미국쭉부쟁이 등)의 서식이 확인된 바, 제거 등 적정 관리 방안을 강구 수립·하여야 함	○ 계절별(4회) 동·식물상 조사를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생물 종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- 기본계획 수립 후 하천공사 시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먹이원 및 서식지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, 어도설치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토록 할 것임 - 육수동물 등 주요종의 생활사를 고려한 번식기 및 산란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, 구간별, 시기별 공사 진행을 달리하는 단계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- 계획하천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생물(애기수영, 가시박, 돼지풀, 미국쭉부쟁이)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 내용	다) 호안은 사면안정성 등 홍수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사로 계획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, 생태계 서식공간 조성 및 수변경관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생태호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	○ 호안은 사면안정성 등 홍수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경사로 계획하였으며, 야생동물의 접근성, 생태계 서식공간 조성 및 수변경관 창출을 고려한 친환경 생태호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라) 횡단구조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도는 주요 어종에 대한 서식 특성 및 유량, 유량변화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어도 형식을 선정·제시하여야 함. - 현재 어도가 설치된 구조물은 어류의 이동 유무 등 어도 기능 유무 확인을 통해 재가설 혹은 존치 여부를 결정 - 어도 형식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어류의 상·하류간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형식(생태어도 보 등)을 선정·제시	○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능력검토를 통해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어도는 하천별 주요 어종에 대한 서식 특성, 유량변화 등을 검토하여 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에 어도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	반영
		마) 본 사업계획의 내용을 하천별, 구역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, 특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(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,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 등) 내 또는 인근의 하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도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. - 하천 식생의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천 생태계의 경우 최대한 출현 식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	○ 하천별 계획의 내용을 평면도를 통해 구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, 생태환경이 양호한 생태·자연도 1등급권역 등은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 내용	2)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가)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의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, 하도정비 및 하상진입 등은 가급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여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의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계획하고, 수리능력검토를 통한 필요구간에 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나) 축제 및 보축은 통수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계획하되, 홍수 피해 또는 향후 예상되는 치수적 문제점 등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분석·제시하여야 함 - 호안형식은 식생호안블럭, 보축 및 환경파라펫트를 적용함을 계획하였으나, 획일적인 하천정비는 지양하고 하천별 경관 특성 및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·제시 - 주변 생태계 연결성 저해 및 경관상 영향 발생 가능성이 큰 파라펫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, 재해예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 필요 시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형동물의 이동을 위한 횡적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·제시 - 무제부 구간은 하천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검토를 통해 호안정비를 가급적 지양	○ 축제 및 보축은 기성제에 대한 능력검토를 토대로 필요한 구간에 한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- 하천별 경관 특성 및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호안형식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- 주변 생태계 연결성 저해 및 경관상 영향 발생 가능성이 큰 파라펫 설치의 제방 증고가 불가능한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가급적 지양하는 계획수립으로 횡적연결성을 확보하였음 - 무제부 구간은 하천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검토를 통해 호안정비를 가급적 지양하였음	반영
		다) 계획 하폭의 규모 결정 시 과거 홍수 이력을 분석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	○ 계획하폭의 규모 결정은 계획홍수량, 하상상태, 기왕홍수위, 유수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 내용	3)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) 축제 및 보축 시 직선화, 일률적인 호안공법, 과도한 경사 적용 등을 지양하고,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계획·제시하여야 함	○ 축제 및 호안계획은 수리능력검토를 통한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계획하였으며, 유로변경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였음	반영
		4) 수환경의 보전 가) 계획 홍수량이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, 이에 따른 홍수위, 하폭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하천별 계획홍수량은 하천설계기준,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, 홍수위, 하폭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나) 일부 하천(섬강, 홍양천)은 하상의 인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도정비를 계획한바, 계획홍수위 변화 등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,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※ (섬강) 2+030-3+280, 15+200-16+784, 18+00-18+785, 23+485-24+200 ※ (홍양천) 3+23-3+545	○ 하도단면의 퇴적으로 인해 통수단면이 부족한 섬강 및 홍양천 일부구간에 한하여 하도정비를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으며, 하도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	반영
		다) 교량, 보 등 횡단구조물은 현황 및 설치(존치)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상실 및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하되, 아치수를 위해 해당 시설을 유지할 경우 생태계의 종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 수생태계 건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 교량, 보 및 낙차공 등 기존시설물능력검토를 통해 시설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, 어도 설치(개량) 등을 계획하여 생태계 종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내 용	라) 하천정비 시 토사유출 및 탁수발생 등으로 하천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,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- 특히,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 보전지역 상류에 위치하는 하천은 취수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	○ 계획수립에 따른 토사유출 및 탁수발생으로 인한 섬강하류 한강합류부 수변구역의 영향을 부유토사 발생량 산정식 및 부하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하고,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마) 하천 유역 내 점비점오염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오염원 관리 대책 수립하는 등 하천의 보전대책을 적극 수립하여야 함 - 비점오염물질 유입 수역(농경지, 주거지역, 고수부지 등)에 대한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·제시	○ 하천 유역내 오염부하량 현황을 제시하였으며, 수질모델링을 통한 장래수질을 예측하여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였음 - 계획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라. 생활환경의 안정성 1) 환경기준 부합성 가)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해당 지자체 지역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,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- 소음·진동 영향 예측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가설방음판넬 등 적정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	○ 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목표기준을 선정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- 정온시설 형태별 소음·진동 영향 예측치를 산정하였으며, 소음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격거리별 가설방음판넬(H=3~5m)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2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가)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(건설, 생활, 지정폐기물 등)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공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. 세부 협의 내용	마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: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)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, 생태환경, 수질 및 수리적 특성,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관리(보전·복원·친수) 계획을 수립하되,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정·제시(좌·우안 구분) 하여야 함	○ 계획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, 생태환경, 수질 및 수리적 특성,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가) 지구별(보전·복원·친수) 지정 근거를 구체적으로, 제시하고 지구별 지정(안)을 도면으로 제시 - 생태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등은 보전지구로 우선 지정 -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지역의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복원지구로 지정 -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친수지역으로 계획하되, 하천의 자연성,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정 ※ 하천의 지구별 구분도에 지역개황, 멸종위기종 출현구역 등을 함께 포함하여 제시	○ 하천공간관리계획 지정근거를 제시하였으며, 지구별 구분도에 지역개황, 멸종위기종 출현구역 등을 포함한 도면을 제시하였음	반영
	III. 기타	□ 우리청의 검토의견, 타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·제시하여야 함	○ 제6장~7장에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계기관 의견,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였음	반영
		○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거나, 타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에 따라 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,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안 등을 제시	○ 타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III. 기타	□ 「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 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(환경부, '13.3.)」에 의거 조사 분야 모두에 대하여 지침에서 규정한 현장 조사표(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)를 제시하여야 함.	○ 동·식물상 조사에 따른 조사표를 부록에 제시하였음.	반영
		□ 동 사업과 관련된 근거(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)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,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.	○ 동 사업과 관련된 근거(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)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였음	반영
		□ 대상지역이 광역적이고 개별 소하천에 대한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,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·제시하여야 함. ○ 광역적인 위치도 및 현황도의 경우 자료의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, 축척, 색상으로 작성·제시	○ 하천별 개수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, 위치도 및 현황도의 경우 자료의 판독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음	반영
		□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(하도급 포함)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·제시하여야 함. ○ 평가서 작성 및 검토,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참여 등 세부적으로 작성	○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(하도급 포함)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강원도	I.총괄 의견	○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여 재정비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·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환경의 가치 평가에 따른 하천의 이·치수기능은 물론 하천 고유의 환경을 보전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.	○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각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, 하천의 이·치수기능은 물론 하천 고유의 환경을 보전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○ 본안 작성시 아래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.	○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강원도	II. 항목별 검토 의견	1.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○ 관련 시·군 환경계획과의 부 합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(P136~154)	○ 계획하천 해당 시·군의 환경 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○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계획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제시 하기 바람	○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계획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제시하였음	반영
		2. 입지의 타당성 가. 자연환경의 보전 (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) ○ 낙차공, 어도설치 계획(안)은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(유속, 수위, 유량 경사 등) 및 지 형(사행경사, 하상경사 등), 주변 자연환경, 어류 조사 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(P573~579)	○ 각 하천별 수리학적 특성, 지형 및 주변 자연환경, 어류조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 및 낙차공, 어도계획을 제시하였음	반영
		(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) ○ 자연경관 협의대상으로 주 요 경관변화 예상지점(특히, 교량 재가설 및 신설)은 경 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첨부 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(P652~680).	○ 하천의 주요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 시행 전·후의 경관변화를 예측 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	(수환경의 보전 ; 수질) ○ 계획하천은 수질오염총량 적용지역(2020년, 섬강B)으 로 일부지역에서는 비점오 염원에 의한 오염 부하량이 지속증가될 것으로 조사됨. 제시한 목표수질 (Ⅰb~Ⅱ 등 급)을 유지·관리를 위한 구 체적인 대안 설정이 필요함 (P689~812)	○ 계획하천 목표수질 유지·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(수환경의 보전 ; 수리·수문) ○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시 계획빈도를 대부분 50,80,100년을 채택하였으나, 원주천은 계획빈도를 200년 으로 채택하였음. 구체적인 채택근거 및 본 하천기본계 획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만 연계된 하천의 200년 계 획빈도 채택 사례 등을 제 시하기 바람(P840~844)	○ 원주천의 계획홍수량 산정시 계획빈도는 ‘섬강수계(전천, 원 주천) 유역종합치수계획(원주지 방국토관리청, 2004)’에서 제 시한 홍수피해장재능(PFD)지수 및 등급을 산정하여 도심지는 200년 빈도로 검토되어 적용하 였으며, 타 하천기본계획 중 200년 계획빈도 채택사례를 제시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강원도	II. 항목별 검토 의견	나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(환경친화적 토지이용) ○ 하천공간을 치수, 이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, 친수기능향상 및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천 공간별 지구 구분을 보전지구, 복원지구, 친수지구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나 복원지구는 대부분 보, 낙차공, 호안 축제 등 시설물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, 친수지구의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음	○ 각 하천별 이·치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, 친수기능향상 및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친수지구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음	반영
		○ 복원지구는 하천의 생태학적 특징을 검토하여 시설물 계획의 본 계획이 제시한 생태통로 확보 방안, 하천의 자정능력 증대 복원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. 친수지구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시(도면 포함)하기 바람.(P997~1036)	○ 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, 이수,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·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하천 이용 및 관리 방향 수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하여 제시하겠음	반영
		○ 제방, 호안의 정비 및 구조물의 재가설, 신설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. 심의의견에서 제시된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구조물의 철거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. - 철거 구조물이 계획될 경우 철거에 따른 영향예측(폐기물, 대기, 소음진동, 수질 등)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바람	○ 기존구조물의 능력검토를 통해 하천시설물을 계획하였으며, 철거 구조물 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	3. 기타 ○ 섬강 하천기본계획은 상류권, 하류권으로 분류하여 별도 용역업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. 하천상·하류권이 연결된 점을 감안하여 홍수량 계획빈도, 구조물 설치계획 등 통일성 있는 검토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함.	○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상·하류권역을 통일성 있게 수립하였으며,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경기도	검토 의견	○ 제방 및 호안 계획 시 야생동물의 이동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경사도를 낮추어 조성하고 자연형 호안공법을 적용하는 등 생태하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	○ 제방 및 호안은 야생동물의 이동 및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를 낮추어 계획하여 생태하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	반영
		○ 공사 시 토사유출, 비점오염원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및 비산먼지,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○ 계획 시행시 토사유출, 비점오염원 발생, 비산먼지,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
		○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〔별표4〕에 따라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,000㎡ 이상이면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.	○ 향후 시행계획 시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겠음	반영
		○ 하천공사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해당될 경우(경기도 관할 지역)승인기관(부서)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·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「별지 제11호 서식」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.	○ 하천공사 시 관련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원주시	검토 의견	☐ 섬강 ○ 호저면 대덕생태공원 활성화 화를 위한 시내지역에서 차 량 접근이 용이한 교량 설 치와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휴식시설 계획 요망	○ 향후 시행계획 시 대덕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량 및 저수호안 설치를 검토하겠음	반영
		○ 지정면 간현생태공원 활성화 화를 위하여 산책로 L=900m, 기존 콘크리트보 철거 후 자연형 낙차공설치, 진입도 로포장 L=500m(B=5.0m), 주 차장 30면, 파고라 등 휴게 시설(캠핑장 등) 계획 요망	○ 향후 시행계획 시 간현생태공 원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및 자연형 낙차공, 진입도로 포장, 주차장 조성, 파고라 등 휴게시 설 등의 계획을 검토하겠음	반영
		○ 부론면 노림리 좌안 노림지 구(L=1,600m) 설치계획은 홍 수관리구역제외 및 제외지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의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	○ 대상필지는 「섬강 하천기본계획 (변경), 2010.12」 수립 시 하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금회 계획에서 미반영하였음	미반영
		☐ 지방하천 : 원주천 ○ NO.0+100~NO.1+550 구간 우안 자전거 도로로 연결 계획 필요(원주천과 섬강 연계)	○ 원주천과 섬강의 자전거 도로 연결은 향후 시행계획 시 검토 하겠음	반영
		○ 원주에서 수립한 『원주천 재 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』을 반영 요망 (※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 합 활용계획 별첨)	○ 원주에서 수립한 『원주천 재 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』을 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향후 시행계획 시 반영내용을 재검토하여 계 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여주시	검토 의견	○주민설명회 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구간에 대하여 대부분 주민들이 설명을 원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 시 환경부분만 다루어 사업계획이지만 충분한 구간별 사업설명을 요청함	○구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설명을 실시할 것임	반영
		○주민들은 사업구간 별 편입 토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(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)	○하천기본계획은 「하천법」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, 하천의 유량,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, 이수,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·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하천 이용 및 관리 방향 수립에 목적이 있음	반영
		○강천면지역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요청함	○하천기본계획 수립·고시 전 강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재설명을 실시하겠음	반영
		○섬강 하류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시(9.2) 참석자 대다수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수립한 사업구간별 사업설명 및 편입토지, 관련 지적도 등을 알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 미흡 등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요청 또는 공청회 등을 요청	○하천기본계획 수립·고시 전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설명을 재설시할 것이며, 향후 하천공사를 위한 시행계획 시 편입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겠음	반영
		○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요청	○충분한 사업설명, 해당지역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양평군	검토 의견	○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부하량 할당대상으로 「수 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(국 립환경과학원)」에 따라 ‘부하 량 산정서’를 작성하여 양평 군과 협의 및 부하량 할당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(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)	○ 시행계획 시 해당 지자체와 수질 오염총량 협의를 통한 부하량 할당을 진행 후 사업을 시행하 겠음	반영
		○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5 기준 에 적합하게 사업을 진행하 여야 함 (대기환경보전법)	○ 사업시행 전 관할 지자체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 먼지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 토록 하겠음	반영
		○ 사업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 제출 및 이른시간(8시전) 공사 전에는 주변 주민들에 게 양해 및 협조요청을 하 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되도록 공사진행 하 여야 함 (소음·진동관리법)	○ 사업시행 전 관할 지자체에 특 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한 후 사 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, 주변 주민들에게 양해 및 협조요청 을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 도록 하겠음	반영
		○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사 시 유입되는 공사차량내 유 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 하여야 함. (토양환경보전법)	○ 공사시 공사장비 오일교환은 가급적 인근 지정 정비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고, 폐유보관시설 을 설치하는 등 유류 외부 유 출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	반영
		○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 물 발생시 법 제17조 규정 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 출자 신고 이행 및 지정폐 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야 함 (폐기물관리법)	○ 공사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등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겠음	반영
		○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를 이행하는 조건 (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)	○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	반영

의견 제출자	평가 항목	의견요지	반영결과 (미반영사유)	비 고
횡성군	검토 의견	○ 현 하도를 중심으로 선형을 선정하되, 하천의 지형, 토지이용형태 및 주거지를 고려하여 하천공사 시행 시 민원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. 또한, 하천구역 결정·고시 후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에게 설명회 또는 열람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	○ 현 하도를 중심으로 하천의 지형, 토지이용상태, 주거지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하천구역 결정·고시 후 시행계획 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수행하여 의견 수렴 할 계획임	반영
		○ 또한, 축제나 보축등 개수계획 수립 시 하폭과 제방고를 고려하여 하상폭 축소로 유수흐름을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하폭(양안)을 결정고려(하천부지 최대활용)	○ 수리능력검토를 통한 축제 및 보축 등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		○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계획고가 제방보다 높고, 도로계획시 교량 주변의 시설물 또는 주택 등으로 종단계획에 어려움이 있음. 따라서, 교량지점에 하폭, 하도정비 및 낙차공등으로 계획홍수위를 저감하는 계획이 필요	○ 구조물 능력검토를 통한 교량, 보 및 낙차공의 계획을 수립하였음	반영
횡성군 주민	-	○ 압곡리 산89-4(구)번지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하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 시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가	○ 하천구역 결정시 현 지형과 제방계획을 바탕으로 「하천법」 제10조(하천구역의 결정 등)에 따라 결정함	-